

영등포구의회  
제20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  
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4. 16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  
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 355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근거규정 정비(안 제1조)

「사무관리규정」 제41조 →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 
규정」 제40조

나. 특수공인의 등록에 대비한 조문 신설(안 제2조제4항)

다. 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정비(안 제3조)

라. 폐기 공인의 보존 방법 등 정비(안 제10조).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34조  
제36조, 제37조, 제40조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32조

#### 5. 검토의견

○ 이 전부개정조례안은, 근거규정인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은,

-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규정을 「사무관리규정」 제41조에서 「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,

- 안 제2조제4항에는 관련 규정 제34조에 따라 특수공인의 등록에 대비하여 특수공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,

- 안 제3조. 제8조에는 관련 규정 제36조(등록)에 따라 공인의 등록, 비치 및 관리자를 정비하였으며, 특히 안 제3조제4항에서는 공인관리자 및 관리기관을 구체화하고, 관리자 직

위를 주무주사에서 동장으로 상향 규정하였음.

- 안 제10조는 관련 규정 제37조(재등록 및 폐기)에 따라 폐기 공인의 보존방법 등을 정비하였음.
- 안 제12조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는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,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관련 규정 시행규칙 제32조(공고의 내용)을 반영하여 공고내용을 규정하였음.
- 검토결과,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한 개정이라 사료되며,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# 참 고 자 료

##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**34조(특수 관인)**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,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.

② 세입징수관, 지출관,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,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,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,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,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>

**제36조(등록)**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,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·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37조(재등록 및 폐기)** ① 행정기관이 분실, 마멸,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(이하 "재등록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, 그 관인을 제39조

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-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,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.

**제40조(공인)**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**제32조(공고의 내용)**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관인의 등록·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
- 2. 등록·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
- 3. 등록·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
- 4. 공고 기관의 장